

# 예 산 총 칙

# 예 산 총 칙

202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84,929,581	11,547,887
일반회계	359,795,814	10,793,874
특별회계	25,133,767	754,013
공기업특별회계	16,559,667	496,790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559,667	496,790
기타특별회계	8,574,100	257,22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40,009	19,200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111,414	33,34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918,250	27,548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331,317	9,94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573,110	167,19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9,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